고양 덕은지구 A2블록 중흥S-클래스 입주자 모집공고(파크시티)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람.

■ 본 아파트는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1.22.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주택(민영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청약과열지역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경기도 성남시, 과천시, 광명시, 화성시(동탄2택지개발지구), 광교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 전역 / 경기도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하남시,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 공공택지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가목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이주대책용 주택)으로 고양 덕은지구 이주대책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1.22.)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고양시는 물론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고양시 1년 이상 거주한자(2018.11.22.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고양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고양시 1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경기도 고양시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1순위 기타 청약일에 청약접수를 하여야 함)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당첨·계약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경기도 고양시 덕은 도시개발지구의 경우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연간 183일 초과하여 국외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역 공급 당첨자 중 해외 체류기간이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 초과 하여 거주한 경우(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 재출국시 계속 거주로 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됨(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 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1. 분양권 등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 "공급계약-준공 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으로 보지 아니함. 가. 시행일('18.12.11) 전 공급계약된 건 나.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다.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 시행일 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공급계약-준공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엑셀 검색결과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 됨. 2. 분양권 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가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 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d-sclass.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제1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19.12.06)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 1순위, 2순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같은 항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 85㎡ 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 85㎡ 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 국토교통부 지정 공고(2019.11.06.) 조정대상지역 세부 구분 중 「주택공급의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제3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제외한 지역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 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계약체결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1순위(당해)	1순위(기타)	2순위			
일정	11월 27일(수)	11월 28일(목)	11월 29일(금)	12월 02일(월)	12월 06일(금)	12월 07일(토) ~ 12월 13일(금)	12월 17일(화) ~ 12월 19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10:00 ~ 17:30)	(10:00 ~ 16:00)
장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9.11.0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고양시 덕은 도시개발지구 내외 유해시설(난지물재생센터, 난지빗물펌프장, 향동천유수지, 군부대, 한국항공대, 마포구 청소차고지, 고물상, 애견훈련소, 개사육장, 기존건축물, 묘지, 장례식장 등)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해당 유의시설에 대한 이전 등을 관련기관(LH)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청 주택과 -45566호(2019.11.21)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은 도시개발구역 A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 지상22층 12개동 총 894세대(임대 391세대 포함) 중 일반 분양아파트 5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이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가목 3)에 의한 이주대책용 주택으로 고양 덕은 이주대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하는 주택임. (2019.10.21. 이주대책자를 대상으로 사전공급신청 접수 및 동·호수 추첨하여 이주대책자 당첨된 3세대를 제외한 500세대를 일반분양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4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99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4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당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이주자 대책 대상자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소계				
민영 주택	2019 000993	01	74.8799A	74.8799	21.8614	96.7413	59.2838	156.0251	50.9649	-	41	4	4	8	1	17	24		2	2022년 11월 예정
		02	84.9693A	84.9693	23.9194	108.8887	67.2721	176.1608	57.8320	3	278	27	26	55	8	116	162		16	
		03	84.9586B	84.9586	23.8264	108.7850	67.2634	176.0484	57.8247	-	101	10	10	20	3	43	58		5	
		04	84.9561C	84.9561	26.7439	111.7000	67.2615	178.9615	57.8230	-	80	8	8	16	2	34	46		4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주택형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2020.05.15	2020.10.15	2021.03.15	2021.09.15	2022.02.15	2022.07.15	입주지정일
74.8799A	110동(6호) 112동(6호)	41	1층	1	289,587	227,413	517,000	51,700	51,700	51,700	51,700	51,700	51,700	51,700	155,100
			2층	2	289,587	235,413	525,000	52,500	52,500	52,500	52,500	52,500	52,500	52,500	157,500
			3층	2	289,587	243,413	533,000	53,300	53,300	53,300	53,300	53,300	53,300	53,300	159,900
			4층	2	289,587	251,413	541,000	54,100	54,100	54,100	54,100	54,100	54,100	54,100	162,300
			5층	2	289,587	259,413	549,000	54,900	54,900	54,900	54,900	54,900	54,900	54,900	164,700
			기준층	32	289,587	269,413	559,000	55,900	55,900	55,900	55,900	55,900	55,900	55,900	167,700
84.9693A	101동(1,2,3,5호) 102동(1,2,3,5호) 104동(1,2,3,5호) 106동(1,2,3,5호)	281	1층	13	328,607	256,393	585,000	58,500	58,500	58,500	58,500	58,500	58,500	58,500	175,500
			2층	16	328,607	266,393	595,000	59,500	59,500	59,500	59,500	59,500	59,500	59,500	178,500
			3층	16	328,607	274,393	603,000	60,300	60,300	60,300	60,300	60,300	60,300	60,300	180,900
			4층	16	328,607	282,393	611,000	61,100	61,100	61,100	61,100	61,100	61,100	61,100	183,300
			5층	16	328,607	290,393	619,000	61,900	61,900	61,900	61,900	61,900	61,900	61,900	185,700
			기준층	204	328,607	300,393	629,000	62,900	62,900	62,900	62,900	62,900	62,900	62,900	188,700
84.9586B	103동(1호) 111동(6호)	101	1층	2	328,566	251,434	580,000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174,000
			2층	2	328,566	261,434	590,000	59,000	59,000	59,000	59,000	59,000	59,000	59,000	177,000
			3층	2	328,566	269,434	598,000	59,800	59,800	59,800	59,800	59,800	59,800	59,800	179,400
			4층	2	328,566	277,434	606,000	60,600	60,600	60,600	60,600	60,600	60,600	60,600	181,800
			5층	2	328,566	285,434	614,000	61,400	61,400	61,400	61,400	61,400	61,400	61,400	184,200
			기준층	29	328,566	295,434	624,000	62,400	62,400	62,400	62,400	62,400	62,400	62,400	187,200
	110동(3호) 111동(3호) 112동(3호)		1층	3	328,566	241,434	570,000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171,000
			2층	3	328,566	251,434	580,000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174,000
			3층	3	328,566	259,434	588,000	58,800	58,800	58,800	58,800	58,800	58,800	58,800	176,400
			4층	3	328,566	267,434	596,000	59,600	59,600	59,600	59,600	59,600	59,600	59,600	178,800
			5층	3	328,566	275,434	604,000	60,400	60,400	60,400	60,400	60,400	60,400	60,400	181,200
			기준층	47	328,566	285,434	614,000	61,400	61,400	61,400	61,400	61,400	61,400	61,400	184,200
84.9561C	103동(2호) 110동(5호) 111동(5호) 112동(5호)	80	1층	3	328,556	217,444	546,000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163,800
			2층	4	328,556	227,444	556,000	55,600	55,600	55,600	55,600	55,600	55,600	55,600	166,800
			3층	4	328,556	236,444	565,000	56,500	56,500	56,500	56,500	56,500	56,500	56,500	169,500
			4층	4	328,556	245,444	574,000	57,400	57,400	57,400	57,400	57,400	57,400	57,400	172,200
			5층	4	328,556	254,444	583,000	58,300	58,300	58,300	58,300	58,300	58,300	58,300	174,900
			기준층	61	328,556	264,444	593,000	59,300	59,300	59,300	59,300	59,300	59,300	59,300	177,9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사항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바람.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고양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는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에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서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1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지역(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고양시 1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특별공급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지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을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기재한 사항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 신청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고양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함.(※유주택자도 가능)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당해),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① 청약예금의 신청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함. (작은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하므로 변경 불필요) ②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① 기타 지역(지방)에서 수도권 지역 전입 시 청약접수 가능함.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청약예금 금액 차액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 신청 가능 (감액 사유시 변경 불필요) • 거주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 고양시(1년 이상) : 고양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최초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함. (주의: 고양시→파주시→고양시인 경우 고양시에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 - 수도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75% / 추첨제 25%) ①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②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고양시 거주/ 수도권 거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① 세대주가 아닌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청약 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단위: 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주택의 공유지분 및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소형·저가주택 등 이란 전용면적 60㎡이하로서 위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한다.
③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주택기간산정기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일반공급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2년 기간 지정하여 발급)
	복무확인서		○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3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1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비속	- 만19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	해당주택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서류		○	해당주택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서류		○	해당주택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
	인감도장	○		본인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위임장	○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인장	○		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 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를 제출하시기 바람.

Ⅵ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9.12.17(화) ~ 2019.12.19(목) 3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30-2)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됨.

▣ 계약시 구비사항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증(납부영수증) [발코니확장 계약금 및 시스템 에어컨 계약금 포함] ※ 계약금은 현장 수납이 불가함.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아파트 계약용) ④ 당첨자의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자는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 상기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외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 대리인의 인장

■ 계약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확정측량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자가 있으면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단, 계약금 입금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불일까지의 이자는 인정하지 않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771301-01-776836	한국자산신탁(주)

■ 계약자 대출안내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 - 계약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실 계약자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은 대출이자 대납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60%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주며, 입주 시 납부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를 통보할 의무가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개시일 전일까지이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중도금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해당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니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미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 할 수 있으며, 불가한 자는 중도금 납입일에 맞추어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출실행 가능하며, 개인이 대출신청하지 않거나 신용 및 금융기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실행이 불가한 자는 개인이 중도금 납입일에 맞춰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입금하여야하며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 : 2022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길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함.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불출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이자후불제 이자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시는 그 승인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비용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Ⅶ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인근에 벌레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서측에는 대덕산 안에 위치한 시설로 진입하는 도로가 계획되어있으며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서측 및 북동측 대덕산(자연녹지지역) 안쪽에 창고, 민가, 대덕산농장 등 기존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으며 시설물로 인한 소음 및 냄새 미관저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주변으로 대덕산(자연녹지지역) 안쪽에 다수의 묘지가 위치하고 있어 향후 미관 등의 저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북서측, 북측에 걸쳐 인삼밭이 위치하고 있어 경작지로 인한 냄새 및 해충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후 진행 하여야 함. • 단지 서측 약 1.1km 지점에 난지물 재생센터 (하수처리장)가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벌레 등이 발생하여 본 단지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남서측 약 800m 지점에 강변북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강변북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먼지,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북측 버스차고지는 현재 미확정이나 향후 확정시 버스차량규모를 고려하여 차로폭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남서측 덕은도시개발구역 내에 오수펌프장 위치예정이며,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벌레 등으로 인해 본 단지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남서측 근린공원1(A5블록 서측)내에 유수지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벌레 등으로 인해 본 단지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남서측 마포구 청소차고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벌레 등으로 인해 본 단지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북측으로 경의중앙선 및 공항철도가 인접하며 동측에 한국철도공사 수색차량기지(수색역), 북서측에 한국철도공사고양 고속철도차량기지(행신역)가 위치하여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남서측 한강변에 가양비행장 위치하며 드론 및 RC비행기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당해 지구 인근에 군부대 및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수색비행장(북측 약 2.2km)이 위치하고 있어 군부대의 훈련(영내 사격장) 등으로 인한 소음 및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이·착륙 시 저공비행 등으로 인한 소음,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고양 덕은지구는 비행안전구역이며 아래 행위제한 및 금지사항 내용을 미리 숙지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비행안전구역 내 행위 제한 및 금지사항 1.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2.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3.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 폭발 등의 행위 4. 기지보호구역 안에서의 무선통신 시설 설치 및 전파발사 행위 5. 비행안전구역내(제2구역~제6구역)에서의 제한높이 이상의 비행장애물(건축물, 구조물, 식물, 그밖에 장애물)을 설치, 재배 또는 방치 6. 항공등화의 명료한 일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 설치 7. 연막, 증기발산 및 색채유리, 기타 반사물체 진열 행위

■ 학교 및 어린이집 관련 유의사항

• 단지 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 신설학교 설립 예정부지는 고양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 A2BL 주택건설사업(894세대)으로 인한 고등학생은 고양시 관내 기존학교에 배치 가능함. • 교육부의 급당 학생 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설립, 학급당 학생 수는 변경 될 수 있음. • 당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유아 및 초등학생, 중학생은 신설 유치원 및 초·중 통합학교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을 통해 배치할 계획이며, 학교설립 확정여부, 위치 및 개교시기는 입주시기와는 다르게 교육부 투자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신설학교 개교 전 입주예정으로 신설학교(초·중 통합학교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개교 전 입주 및 중앙투자심사 결과 등으로 인한 학교 설립이 지연(취소)되어, 인근학교(덕은지구 밖)에 배치 및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중봉건설 주식회사) 부담으로 자체 통학대책(등하교 시간 통학버스 운행 등)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임.

■ 단지내부여건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외부의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추후 인허가 과정 및 도시의 트렌드 변화, 색채의 유형변화 등에 의해 변경되어질 수 있으니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야간 경관조명에 의해 고층세대는 눈부심 및 수면장애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모형 등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옥외 계단 및 외부용 엘리베이터의 마감재, 형태, 크기 및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아파트 저층부 마감은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서 층별, 위치별 시공부위에 따라 석재 또는 노블스톤 뿜칠, 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오니 청약 전 모형 또는 CG 등을 확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동 입면에 설치되는 수직수평돌출구조물(몰딩)에 접한 세대의 각 실에서의 조망권 침해,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직수평돌출구조물의 사이즈는 추후 임의 조정 시공할 수 있으며, 수평몰딩의 경우는 돌출부분에 부딪히는 빗소리 등에 의해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상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임대, 공급 혼합 공동주택용지로 60㎡이하 임대부분(391세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주택용지로 건설해야 한다"라는 토지공급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임대 및 분양 아파트가 혼합된 단지로써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으며, 입주자 임의로 임대와 분양을 구분 짓는 행위를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주동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고양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상 고도제한 (비행안전구역의 높이제한"에 따라 MRL타입 (기계실이 없는 타입)의 엘리베이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 A2블록의 공동주택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지역 냉·난방 의무 사용지역임.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되며, 냉방은 거실, 안방에 계약자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냉매배관이 설치됨(단,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냉매배관은 별도 시공되지 않음) • 전기 및 통신맨홀 등의 인입위치는 KEPCO(구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가스계량기 및 세대 가스배관은 실내에 설치 될 예정이며 원격검침 설치시, 검침 데이터를 도시가스사에 제공 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인허가 과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팬룸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불쾌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물(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D.A, 자전거 보관소, 탑라이트, 썬큰 등)은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D.A가 설치되는 인근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범상 취약 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D.A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부대시설(공용홀 포함)의 마감 및 시설의 경우 견본주택과 홍보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설치되는 수량과 사양 및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및 추가요구를 할 수 없음.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 할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모형 및 공급단지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서비스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는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의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색상 및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함.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주변 인접대지와 레벨차이가 있는 부분은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조경 시설물변경에 따른 선형이나 포장 및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조경 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한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주 및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로 연결되는 보행자 출입로 및 1층 아파트 현관은 주변대지 여건 및 디자인 특화에 따라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보행자도로와 연계된 대지내 전면보도는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일체 할 수 없고,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행자 출입구의 형태 및 구조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최상층의 옥상 등은 개별 사적 소유물이 아니므로 1층의 녹지공간과 같이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고 공공의 목적에 반해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형할 경우 변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은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다양한 평면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른 주출입구 차선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1층이 필로티로 구성된 동은 입구 상부에 보행자 안전시설인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2층 세대는 빗물에 의한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고양 덕은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판상형은 경사지붕설치를 권장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및 경관위원회 자문의 결과에 따라서 101동, 102동, 104동, 106동 옥상에는 박공모양의 지붕구조틀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박공모양 지붕구조틀의 설치 유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101동과 109동 사이, 103동과 110동 사이, 105동과 111동 사이, 108동과 112동 사이 일부세대는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협소하여 각 세대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하여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쓰레기 보관소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8동 정면 105동 후면에 어린이놀이터-1, 110동 정면 109동 후면에 어린이놀이터-2, 101동 후면 102동 정면에 어린이놀이터-3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정면 109동 측면에는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2동 정면 101동 후면에는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7동, 108동 정면 105동 후면에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10동 후면과 111동 전면사이, 111동 후면과 112동 정면 사이, 112동 측면과 108동 후면 사이, 109동 후면에 체력단련시설 위치하고 있으면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정면 102동 후면에 잔디마당, 커뮤니티마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6동 정면 104동 후면에 커뮤니티마당 및 스쿨버스 정류장, 맘스테이션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5동 정면 103동 후면에는 총림원 (정원 및 식재공간) 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 위치한 단지 주출입구 및 주차장램프에 인접한 101동, 109동은 단지 출입 및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 • 단지 동측에 위치한 단지 부출입구 및 주차장램프에 인접한 104동, 106동은 단지 출입 및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 • 101동, 109동 정면 단지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1, 근린생활시설2가 위치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사용자로 인하여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6동, 110동, 112동은 단지배치상 측벽부분이 단지경계부 조경석쌓기 구간과 가깝게 시공되는 구조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1동 19층, 102동 19층, 103동 19층, 107동 17층, 108동 17~18층, 111동 22층, 112동 15~20층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창은 건축인허가시 채광창호의 설치의 제약에 따라 0.5㎡창으로 채광창이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1동, 102동, 106동, 108동, 109동, 110동, 112동에는 항공장애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시설물로 인하여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후면에 위치한 주차공간은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자 임의로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 출입구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차량 정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 임의로 통제 및 점유 소유권주장 등을 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실외기실이 따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에서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여건에 따라 입면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의 외관 디자인(입면, 벽체마감 등) 및 외부 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 간판위치, 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실제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105동, 111동 하부에 휘트니스센터 및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환기 및 채광에 불리 할 수 있으며,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11동 지하1층에는 재활용폐기물보관시설,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물로 인한 악취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부속시설물의 에어컨실외기, 배기휀,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엘리베이터 등으로 인하여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출입문 크기,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의 실외기는 커뮤니티 인근 지상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다목적 체육시설, 바닥 마감재는 스포츠 매트 (렉스코트)로 시공되며, 체육관용 목재 후로링 등의 유사마감재로 설치가 되지 않으니 이점을 반드시 확인하여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상부에 지붕이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및 차량불빛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동선 및 지하층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대지레벨차로 인하여 총 지하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7동, 108동, 112동은 지하1층과 지하2층 2개층을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구조이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9동, 110동, 111동은 지하2층과 지하3층 2개 층을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의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높이는 101동, 109동 앞에 위치한 주출입구와 연결된 출입 램프 높이는 약 2.7m이며 104동, 106동 사이에 위치한 부출입구와 연결된 출입램프 높이는 약 2.7m로 탑차 및 택배차 진입이 가능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높이가 변동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지하1~2층 주차장에서 약 2.7m, 지하3층 주차장에서 약 2.3m로 부위별로 상이하며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로 높이는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탑차 및 택배차의 통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 제연휀룸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 외부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총 7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및 개소는 달라질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은 본공사시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음. • 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 같은 통신 설비는 103동 옥상에 설치 될 예정이며, 차후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통신설비의 설치 위치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위치 변경 및 설치개소가 변경 될 수 있음) •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비는 지하주차장 또는 103동, 105동 지하층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동통신설비 안테나는 102동, 104동, 109동, 111동에 지붕층에 설치 될 예정이므로 차후 소음 및 진동 또는 전파의 교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단, 향후 본 공사 진행시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위치 변경 및 설치개소가 증감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벽부 및 옥탑층에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동의 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함. • 단지 주변 경계부는 인근 도로와 약 0.5~2.5M 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레벨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연석 쌓기로 시공될 예정이며 향후 단지를 이용하는 입주자는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차후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디자인, 구조물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형태 및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105동, 107동, 111동, 112동 근처에 외부 계단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배치도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현재 적용된 신재생에너지는 지열과 태양광 에너지이며, 지열에너지 기계실은 111동 지하2층에 위치함. • 태양광 집광판은 101동, 102동, 104동, 106동, 108동, 110동, 112동 경사지붕 및 옥상에 설치될 예정임(태양광 집광판 설치시 동배치, 방위각, 일조량, 그늘, 여부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설치예정이며 효율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에서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에 정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장 13개소(각 주동 후면, 근린생활시설 후면) 및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1개소(111동 지하1층)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크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IOT 관련 유의사항

• LGU+의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임.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등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환기, 난방제어 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하며, 반드시 LGU+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고(통신사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U+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와 영상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옵션선택으로 선택 할 수 있는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IoT 호환이 되지 않는 제품임.

Ⅹ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1.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함(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2.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상 호	중봉건설(주)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법인등록번호	200111-0309471
시공회사	상 호	중흥토건(주)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법인등록번호	205511-0004135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gd-sclass.com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30-2 ▣ 분양 문의 : 031)968-957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흥S-클래스

고양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

분양 문의 031)968-9570